

한국임업진흥원 2022년도 제1차 인재채용 채용공고

일반직 및 공무직

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
산림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나갈 우수한 인재를 찾습니다.

2022년 3월 7일 | 한국임업진흥원장



- 본 채용은 정부의 '기회평등·공정경쟁'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.
- 지원자 여러분께서는 본 채용이 NCS 기반 채용전형임을 인지하고 입사지원 시 각 채용분야별 공고문에 제시된 NCS 분류체계와 국가직무능력표준 웹사이트(www.ncs.go.kr)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내용

구분	직급	채용예정 직무	인원	채용예정 주요업무	근무지
일반직 5급과 (재용형 인턴)	산림정보관리	1 명	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, 통계	서울	
	R&D 기획관리	1 명	R&D기획관리, 성과확산	서울	
	산림자원품질관리	2 명	임산물 품질관리, 목재 품질관리	서울	
	시설안전관리	1 명	건축, 시설 관리	서울	
	산림일자리창출	1 명	산촌사업지원	서울	
	산림일자리창출	2 명	창업지원	대전	
	산림자원보호	4 명	산림병해충	대전	
일반직 소계		12 명			
공무직 공무직2급	임업·임산	4 명	목재산업지원, 산촌사업지원, R&D관리수행 지원 등	서울	
	조사분석	1 명	임업인 교육 사업수행 지원 등	영주	
	조사분석	4 명	목재제품 시험분석, 일업경영정보 분석 지원 등	서울	
	조사분석	3 명	산림자원보호 사업수행 지원 등	대전	
	일반사무 (장애인)	1 명	일반사무, 사업수행 지원 등	대전	
공무직 소계		13 명			
합계		25 명			

* R&D 기획관리, 「시설안전관리」, 「임업·임산(목재산업지원, 산촌사업지원, R&D관리수행 지원 등)」, 「조사분석(목재제품 시험분석, 일업경영정보 분석 지원 등)」 직무는 2023년 1분기 이후 공정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대전으로 근무지 변동 예정

* 모든 직무는 2023년 공정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대전으로 근무지 변동 예정

* 응시자 중 해당직급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
* 투명한 채용 문화 선도 위해 각 채용단계 단계마다 감사실 직원 참관

지원자격

구분	직급	직급별 응시자격
일반직	공통	• 자격: 제한 없음
공무직 공무직2급	임업·임산	• 자격: 제한 없음
	조사분석	• 자격: 제한 없음
	조사분석	• 자격: 장애인, 학력/경력 제한 없음 * 장애인 고용율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
일반사무 (장애인)		13 명
합계		25 명

*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광고 마감일 기준

* 단,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임용예정일 기준 진종원 정년(만60세) 미만인 자

* 「한국임업진흥원」 인사규정 제7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- ① 국가기무부령,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- ② 「병역법」 제76조에 해당하는 자
- ③ 법률에 의하여 종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- ④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⑤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5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
- ⑥ 그 밖의 진종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자

*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, 타 기관에서 경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지 않은 자

기선정 적용

구 분	대 상	서류전형	필기시험	면접시험	비 고
법률상 가점	보훈 (취업지원대상자)	지원자의 보훈 등급에 따라 만점의 5%~10%	좌동	좌동	
	장애인	만점의 5%	해당없음	해당없음	
회사 자체 가점	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	만점의 3%	해당없음	해당없음	
	한국임업진흥원 우수 청년인턴	만점의 5%	해당없음	해당없음	
	진종원 재직자	재직기간에 따라 만점의 3%~5%	해당없음	해당없음	일반직 채용에 한함
	취약계층 (사회적기업육성법)	만점의 3%	해당없음	해당없음	
기타 가점	한국사능력시험	등급별로 최대 5%	해당없음	해당없음	

* 기타 가점을 제외하고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(법률상 가점 및 회사자체 가점) 가장 유리한 가점 1개 사항만 적용할 수 있음.

* 보훈(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) 취업지원대상자

- 국가기무부령,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
- 법률에 의하여 종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- 그 밖의 진종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자

- 「경기기무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7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20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21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22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23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24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25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26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27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28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29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30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31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33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34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35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36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37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38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39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41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42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43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44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45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46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47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48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49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50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51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52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53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54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55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56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57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59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60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61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62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63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64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65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66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67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68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69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70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71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72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73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74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75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76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77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78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79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80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81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82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83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84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85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)

- 「국가기무부령」 제86조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